



제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등〉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72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제폭력 개념 및 현황	3
2. 총괄적 검토	7
3. 조문별 검토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 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교제폭력 개념 및 현황

가. 교제폭력 개념

- 교제폭력은 법률상 용어가 아닌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 성적 · 정서적 ·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¹⁾으로서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법적 정의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교제폭력이 사적영역으로 간주되어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 이러한 교제폭력은 현재 범죄유형에 따라 「형법」(이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제폭력은 행위태양에 있어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범죄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서로 다양하고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음.

1) 신보라,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9. p.4

○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교제폭력은 다른 일반범죄에 비하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스토킹행위와 유사하게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각각의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피해자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가정폭력의 행위객체인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되는바, 교제폭력은 법률상 혼인 또는 사실혼 등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정구성원 관계가 아닌, “애정”을 기반으로 한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피해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교제폭력은 “관계”에 초점을 둔 개념인 반면 스토킹행위는

“행위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교제폭력의 한 유형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교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구별되는 점이 있음.

나. 교제폭력 현황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에 대한 신고건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2022년에는 2018년(46,689건) 대비 65.9%가 증가한 70,790건을 기록하였음.

○ 교제폭력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2023년 9월 기준 전체 검거인원(10,466명) 중 폭행·상해가 68.2%(7,13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체포·감금·협박이 9.0%(948명), 성폭력이 3.0%(322명)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전체 검거인원의 97.64%인 10,219명이 불구속되었고 2.36%에 불과한 247명만이 구속되었음.

< 교제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

(단위: 건, 명)

구분	신고 건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계	폭행· 상해	체포·감 금·협박	성폭력	기타	계	구속	불구속
2018	46,689	10,203	7,464	1,089	99	1,554	10,203	354	9,849
2019	50,581	9,823	7,003	1,067	84	1,669	9,823	290	9,533
2020	49,225	8,951	6,416	898	51	1,586	8,951	212	8,739
2021	57,305	10,538	7,507	1,000	145	1,886	10,538	216	10,322
2022	70,790	12,828	9,068	1,154	274	2,332	12,828	214	12,614
2022.9	52,771	9,859	7,013	890	205	1,751	9,859	148	9,711
2023.9	58,571	10,466	7,138	948	322	2,058	10,466	247	10,219

* 자료: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4」, 2023. 12. p.133. * 출처: 경찰청(2023)

2. 총괄적 검토

- 최근 강남역 교제살인 사건,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등 현재 또는 과거 연인관계에서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교제폭력은 더이상 연인 간 발생하는 단순한 애정문제가 아닌 중대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과 같이 조기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바, 개정안은 현행 법에 교제폭력 및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교제폭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범죄보다 지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밖에 없어 경미한 수준에서 시작하였더라도 방치할 경우 보복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이에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인 바, 교제폭력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스토킹행위와 결부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교제폭력의 범죄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인데, 이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조치는 할 수 없게 됨²⁾.
- 개정안에 따르면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도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사건 초기단계부터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므로 피해자보호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① 스토킹

2) 다만, 경찰청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서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만 가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폭력의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 이외에도
②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의 범위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방안 ③ 교제폭력만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제폭력에 관한 별도의 특례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제2201445호)”, 가정폭력 범주에 친밀한 관계
또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제
2201584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2201685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조문별 검토

가. 법 제명 및 목적 규정

- 개정안은 제명 및 목적 규정에 “교제폭력범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임(제명 및 안 제1조).

현행	개정안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스토킹범죄</u>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u>스토킹범죄 피해자에</u>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u>피해자를</u>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u>----- -----<u>피해자에</u>----- -----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피해자를</u>----- -----.

- 개정안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톱킹범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교제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법 제명 및 목적 규정에 교제폭력범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보임.

나. 교제폭력 관련 정의규정 신설

- ☐ 개정안은 “교제관계”, “교제폭력행위”, “교제폭력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 <u>교제(交際) 관계</u> ”란 애정에 기반한 연인(戀人)관계나 연인관계에 이르기 위하여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u><신설></u>	4. “ <u>교제폭력행위</u> ”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상대방의 기본적인 권리,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일상을 지배하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말한다.
<u><신설></u>	5. “ <u>교제폭력범죄</u> ”란 교제폭력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현행	개정안
	<u>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u>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2조(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및 제264조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78조(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79조(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0조(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1조제1항(상해에 이르

현행	개정안
	<u>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u> <u>다.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제283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u> <u>라.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및 제305조의2(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및 제302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u> <u>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u> <u>바. 「형법」 제2편 제37장 권</u>

현행	개정안
3. “피해자”란 <u>스토킹범죄</u>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생략)	<u>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u> <u>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u> 6.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u>로----- -----. 7. (현행 제4호와 같음)

□ 개정안은 “교제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전제로 “교제폭력행위” 및 “교제폭력범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중 “교제폭력범죄”를 “교제폭력행위로서 형법상 폭행·협박죄 등의 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교제폭력범죄”는 새롭게 규율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 자체는 현행법상 형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나, “교제관계” 또는 “교제폭력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피해자 보호조치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적용받게 되는 차이가 있는바, 적용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교제관계” 및 “교제폭력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3호는 “교제관계”를 “애정에 기반한 연인관계나 연인 관계에 이르기 위하여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친밀한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인관계”, “친밀한 관계” 등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제관계”에 대한 객관적 판단 및 입증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교제관계”는 일방만이 교제관계로 인식하는 경우, 결혼한 사람끼리 교제하는 경우, 동성 간 교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바, 이를 모두 법률상 “교제관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안 제2조제4호는 “교제폭력행위” 범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기본적인 권리,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일상을 지배하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강압적 행위”의 개념이 모호하여 당사자 일방의 강압적 통제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안 제2조제5호는 “교제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교제폭력과 마찬가지로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범죄³⁾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공갈죄·재물손괴죄, 성폭력

3)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처벌법상 불법촬영물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조성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안 제2조제4호와 관련하여, 증거가 어려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강압적 통제행위”를 교제 폭력행위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한바, “교제폭력 행위” 정의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안 제2조제5호와 관련하여, 교제폭력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와 유사하므로 가정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중 교제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불법촬영물죄(미수포함), 정보통신망 이용 협박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안 제2조제4호와 관련하여, “강압적 통제행위” 정의 신설은 개념이 모호하고 입증이 어려워 법률 적용에 혼란이 우려되는 바, 보호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위 태양 등 개념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고,

○ 안 제2조제5호와 관련하여, “교제폭력범죄” 범위가 기존에 발의된 입법안과 비교하여 가장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가정폭력처벌법」을 참고하여 주거침입, 손괴, 공갈,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범죄유형을 추가하고 치사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 개정안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에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장 스토킹범죄 <u>등의</u> 처리절차	제2장 스토킹범죄 및 <u>교제폭력범죄 등의</u>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 행위 <u>신고</u>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u>스토킹행위</u>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스토킹 행위 또는 <u>교제폭력 행위 신고</u> 등에 대한 응급조치) ----- <u>스토킹 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u> 에----- ----- -----.
1. <u>스토킹행위</u> 의 제지, 향후 <u>스토킹행위</u> 의 중단 통보 및 <u>스토킹행위</u> 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1. <u>스토킹 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u> 의----- <u>스토킹 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u> 의----- <u>이를</u> ----- --
2. <u>스토킹행위자</u> 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u>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 행위자</u> 와-----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스토킹 피해</u>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u>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피해</u> ----- ----- -----

현행	개정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생략)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사법경찰관은 교제폭력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교제폭력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u>스토킹행위의</u> 요지, 긴급응급조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의

현행	개정안
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법원 판사는 <u>스토킹행위</u>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③ ----- <u>스토킹행위</u> 또는 <u>교제폭력행위</u> 가----- ----- -----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u>스토킹행위</u> 의 <u>상대방등이나</u>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 ----- -- <u>상대방등</u> 또는 <u>교제폭력행위</u> 의 <u>상대방이나</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u> 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후 <u>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u> 주거	② ----- <u>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은</u>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현행	개정안
등을 옮긴 경우에는 <u>사법경찰관에게</u>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u>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u>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u>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u>: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생략) ⑥ <u>긴급응급조치</u>(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	<u>주거등을</u>-----<u>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법경찰관에게</u>-----. ③ <u>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의</u>-----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또는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 및</u>----- ----- -----. 1. -----<u>상대방등 또는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u>----- ----- 2. (현행과 같음) ⑥ <u>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u>----- ----- ----- -----

현행	개정안
다. 1.·2. (생략) <u><신설></u>	--. 1.·2. (현행과 같음) <u>⑦ 제4조제2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u> <u>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u> <u>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u>가. 제4조제2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u> <u>나. 제4조제2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u>

현행	개정안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u>스토킹범죄가</u>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조(<u>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u>)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조치</u> (이하 “<u>잠정조치</u>”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u>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u> <u>다. 제4조제2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u>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 ---<u>스토킹범죄 또는 교제폭력범죄가</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u>잠정조치</u>) ① ----- ----- ----- ----- ----- -----<u>조치</u> <u>를</u>-----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u>교제폭력범죄의 원</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각 호의 <u>잠정조치</u>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u>제4호의</u>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u>스토킹 행위자</u>,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	<u>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 1. <u>피해자에 대한 교제폭력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u> 2. <u>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u> 3. <u>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u> 3의2. <u>전자장치의 부착</u> 4. <u>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u> ③ ----<u>및 제2항 각-----조치 (이하 “잠정조치”라 한다)-----.</u> ④ ----- <u>제4호 및 제2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u> ----- -----<u>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행위자-----</u> -----.

현행	개정안
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u>피해자</u> 또는 그의 동거인, <u>가족</u>, 그 <u>법정대리인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u>스토킹행위자에게</u>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u>스토킹행위자에게</u>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u>스토킹행위자에게</u>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 ----- -----. ⑤ 제1항제3호의2 및 제2항제3호의2에----- -----. 1. ~ 3. (현행과 같음) ⑥ ----- -----<u>피해자</u>, 그 <u>법정대리인</u> 또는-----<u>가족에게</u> -----. ⑦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u>스토킹행위자</u> 또는 <u>교제폭력행위자에게</u>----- -----. 1. <u>스토킹행위자</u> 또는 <u>교제폭력행위자에게</u>----- 2. <u>스토킹행위자</u> 또는 <u>교제폭력행위자에게</u>-----

현행	개정안
<u>스토킹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u>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u><신 설></u>	<u>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 행위자가-----</u> <u><삭 제></u> ⑧ 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2항제2호·제3호·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

현행	개정안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u>스토킹 행위자에게</u>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u>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u>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후 <u>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u>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u>스토킹 행위자에</u>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제9조제1항제3호의2에</u>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에</u> <u>게</u> ----- --. ③ <u>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스톱킹범죄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의</u> ----- ----- <u>주거등을</u> ----- ----- -----. ④ ----- ----- <u>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에</u> ----- -----. ⑤ ----- ----- <u>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9조제2항제3호의2</u> ----- -----

현행	개정안
제5장의2에 따른다.	-----.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u>스토킹행위자나</u>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u>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나</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u>스토킹행위자</u>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④ ----- ----- ----- ----- <u>스토킹행위자나 교제폭력행위자</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스토킹행위자</u> :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2. <u>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 -----
3. <u>제9조제6항</u>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u>제9조제1항제4호</u> 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3. <u>제9조제7항</u> ----- ----- <u>제9조제1항제4호</u> <u>또는 제9조제2항제4호에</u> ----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	⑤ ----- ----- ----- -----

현행	개정안
에서 같다)은 <u>스토킹 행위자</u> 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 실한다.	----- <u>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에----- ----- ----- -----.
제12조(항고) ① 검사, <u>스토킹 행 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u> 은 긴 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12조(항고) ① ----- <u>스토킹 행 위자, 교제폭력행위자 또는</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스톱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톱킹행위자 ·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②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 반복적으로 행할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하되,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결정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대상자에 교제 폭력행위 상대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 상대방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유사한 수준⁴⁾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교제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임.

○ 이는 교제폭력범죄가 성립되기 전인 “교제폭력행위” 단계에서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제폭력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법체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제1호는 사법경찰관에게 교제폭력행위 현장에 나가 “향후

4) 현행법(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범죄)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접근금지 한정) 객체는 “스토킹행위 상대방(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 및 가족”인 반면, 개정안(안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교제폭력행위(범죄)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접근금지 한정) 객체는 “교제폭력행위 상대방(피해자)”만이 해당함.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2항은 “교제폭력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정의 규정인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교제폭력행위의 경우 교제폭력범죄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데 교제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 반면, 교제폭력범죄는 단 1회의 행위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됨.
- 특히 실제 교제폭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폭행·협박의 경우 1회의 행위만으로도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이 성립되는바, “교제폭력행위의 지속적·반복적 발생 우려”를 전제로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은 폭행 등 1회의 행위만으로도 가정폭력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전제로 모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보호조치 제도 비교 >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현행	개정안(교제폭력 관련)
＜응급조치＞			
요 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진행 중인 교제폭력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조치권자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조치유형	1. 폭력행위자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1. 스톱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톱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1. 교제폭력행위의 제지, 향후 교제폭력행위의 중단 통보 및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교제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교제폭력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조치기간	별도 규정 없음		
불이행시 제재	별도 규정 없음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 긴급응급조치(스토킹·교제폭력)＞			
요 건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교제폭력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 교제폭력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현행	개정안(교제폭력 관련)
조치권자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조치내용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1.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후 조치	•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사법경찰관) →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검사)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사법경찰관) → 48시간 이내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검사)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 승인(판사)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사법경찰관) → 48시간 이내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검사) → 교제폭력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 승인(판사)
불청구/기각시	즉시 긴급임시조치 취소	즉시 긴급임시조치 취소	즉시 긴급임시조치 취소
조치기간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최장 1개월 (잠정조치 결정시 효력 상실)	최장 1개월 (잠정조치 결정시 효력 상실)
불이행시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현행	개정안(교제폭력 관련)
<임시조치(가정폭력) · 잠정조치(스토킹·개정안)>			
요 건	· <u>가정폭력범죄</u> 재발 우려 (검사청구 시) ·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 결정 시)	· <u>스토킹범죄</u> 재발 우려 (검사청구) ·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원직권)	· <u>교제폭력범죄</u> 재발 우려 (검사청구) ·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원직권)
청구권자	검사	검사	검사
조치내용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4호 및 6호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 피해자에 대한 교제폭력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기간	1호~3호: 기본 2개월 최장 6개월 4호~6호: 기본 1개월 최장 2개월	2호·3호·3호의2 － 기본 3개월, 최장 9개월 4호: 1개월	2호·3호·3호의2 － 3개월 4호: 1개월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현행	개정안(교제폭력 관련)
불이행시 제재	1호~3호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2호·3호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장치효용훼손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호·3호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장치효용훼손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여성가족부는 보호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스톱킹행위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제폭력행위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명확성 부족으로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유사입법례인 가정폭력처벌법과 같이 “교제폭력범죄”에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조문에 규정된 “교제폭력 행위”와 “교제폭력행위자”를 각각 “교제폭력범죄”와 “교제폭력범죄 행위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안 제9조(잠정조치)와 관련하여,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해 가해자의 집착수준 감소, 인식개선 등을 위한 상담·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과의 위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개정안은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의한 조사 대상자에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u>스토킹범죄의</u>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u>전담</u>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u>전담</u>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u>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 ----- <u>및 교제폭력범죄 전담</u> ----- ----- ----- <u>및 교제폭력범죄 전담</u> -----.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u>전담</u>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u>전담</u>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u>및 교제폭력범죄 전담</u> ----- ----- <u>및 교제폭력범죄 전담</u> ----- -----.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u>전담</u>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u>전담</u> 사법경찰관에게 <u>스토킹범죄의</u>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	③ ----- ----- <u>및 교제폭력범죄 전담</u> ----- <u>및 교제폭력범죄 전담</u> -----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u>

현행	개정안
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교제폭력범죄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가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사의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피해자 보호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전담조사를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검찰과 경찰의 인력 현황 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담조사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개정안은 신변안전조치 대상자에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u>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u>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u> ”으로 본다.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u> ----- ----- ----- ----- ----- ----- ----- -----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u> -----.

□ 현행법상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⁵⁾에 따라 특정시설에서의 보호·신변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조치유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경호, 외출·귀가 시 동행,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고, “교제폭력범죄 신고자”의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강간 살인·치사죄 등 동법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일부 범죄에 대한 신고자여야 함.⁶⁾

□ 안 제17조의2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신변안전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 3. 임시숙소 제공
 -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5. 비상연락망 구축
 - 6.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바.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개정안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원과 사생활에 대해서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자에 교제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스토킹범죄의</u>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4.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u> 의-----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제17조의3은 교제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등이 공개·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이 경우 현행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⁷⁾에 따라 교제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게 됨.

7)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사. 형벌과 수강명령 등과 병과

- ☐ 개정안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자에 교제폭력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u>스토킹범죄를</u>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톱핑 <u>치료프로그램의</u>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u> ----- ----- ----- ----- ----- ----- ----- ----- ----- ----- ----- ----- ----- ----- ----- ----- <u>및 교제폭력 치료프로그램의</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u>스토킹범죄를</u>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② -----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u> ----- ----- ----- ----- ----- -----

현행	개정안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1. 스토킹 <u>행동의</u> 진단·상담	1. ----- <u>및 교제폭력 행동의</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u>스토킹범죄를</u>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u>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제19조는 교제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교제폭력범죄자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교제폭력의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제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있어 보임.

아. 벌칙

- 개정안은 교제폭력행위자가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9조제4항을</u>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3. (생략) ② <u>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u>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략)	제20조(벌칙) ① ----- ----- ----- -----. 1. <u>제9조제5항을</u> ----- ----- ----- 2. 3. (현행과 같음) ② <u>제9조제1항제2호 ·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 제3호</u>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 개정안은 교제폭력행위자가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및 유사 범죄와의 형벌 균형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자. 기타

-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해자가 반복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이용되고 폭력정도가 심화되는 문제 개선이 필요한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 협박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로 인해 가해자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거나 보복을 우려하여 처벌의사를 번복한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필요성에 공감하나, 일시적 다툼·갈등 등 경미사안의 형사입건화, 피해자 의사 존중 필요성 등 사유로 유지하는 입장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